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소고

– 전자화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

장진성*

Ⅰ. 서 론 ····· 51
1. 들어가는 말 ····· 51
2. 논의의 방향과 범위 ····· 53

Ⅱ.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대한 관점 ····· 54
1. 인프라/서비스 제공자의 시각: 금융정보망의 고도화 ····· 55
2. 인프라/서비스 이용자의 시각: 지급수단의 이용 실태 ····· 58
3. 전자화의 실체성 ····· 58
4. 전자화에 관한 보완적 시각: 지급수단의 성격에 대한 고려 ····· 72

Ⅲ. 소 결 ····· 78

참고문헌 ····· 80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결제연구팀 연구역(E-mail: sgtleo76@kftc.or.kr)

〈요 약〉

우리나라의 지급결제는 지난 40여년간 '전자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오늘날의 전자지급결제는 고도화된 금융정보망을 이용하여 단일 금융기관의 지점간은 물론 복수의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거래를 통신기능을 갖춘 거의 모든 단말기를 통해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단말기가 새로운 전자지급채널로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비중은 2010년을 기준으로 90%를 넘어섰으며 다양한 지급결제통계와 언론보도는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는 얼마나 실체적으로 전자화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배경에는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건재함을 시사하는 정황증거들이 있다.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진행에 대한 시각을 금융정보망의 고도화가 아닌 지급수단의 이용 측면에 주목할 경우 지급결제의 전자화 또는 정보화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급수단의 처리방식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본질적인 성격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급수단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은 전통적으로 비대면 지급채널로 간주되어온 CD/ATM이 현금, 수표와 같은 비전자적 지급수단의 확산 경로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는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바라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1) 비대면 채널의 비중 증가는 비현금 지급수단의 확산과 동의어가 아니고, 2)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대한 시각 정립에 있어서 지급수단의 획득 · 처리 방식과 지급수단의 본질적 성격 중 어느 한쪽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법률적 정의가 기반을 두고 있는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지급수단의 성격을 고려하는 시각간의 차이는 전금법상의 전자적 방식 요건과 개입 지급수단의 전자적 성격 요건의 동시 충족을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필요충분조건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카드를 포함하여 모든 실물(實物)지급수단이 개입되는 거래를 전자지급거래 분류에서 배제하는 극단적인 엄격주의와 지급수단의 성격에 상관없이 '전자적 방식' 요건을 갖출 경우 전자지급거래로 보는 포괄주의의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현금의 건재함은 향후의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진행도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전자지급채널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장벽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제도가 본질적으로 띠고 있는 보수성과 연관이 있다.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급결제는 1969년 최초의 신용카드가 등장한 이래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주요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은행과 카드회사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연혁을 각종 위원회, 사무국 등 조직의 구성 · 발족 및 설립, 제도, 규정, 절차, 계획의 수립 및 제 · 개정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요 금융정보망의 가동 및 확대, 주요 지급수단과 채널의 보급 및 확대만을 나열해도 지난 40여 년간 8.3개월에 한 번꼴로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촉진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로 오늘날의 전자지급결제는 2000년대 중반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existing or being everywhere at the same time)'[1]는 의미의 단어인 'ubiquitous'를 이용하여 만든 '유비쿼터스 뱅킹(ubiquitous banking)'이라는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유행어가 현실로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고도화되었다.

〈표1〉 은행 및 카드 부문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혁

1969. 7.	신세계백화점, 국내 최초의 신용카드인 신세계카드 발행(카드)
1972.11.	한국외환은행 본-지점간 온라인 보통예금시스템 가동
1975. 8.	한국외환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 및 현금카드 도입
1977. 2.~5.	은행지로제도 실시: 전기요금수납이체 · 급여계좌이체 업무
1978. 4.	한국외환은행,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VISA) 발급(카드)
1979. 4.	채권자계좌이체업무 개시
1981. 3.~8.	일반계좌이체, 대량지급, 자동계좌이체업무 개시
1984. 7.	조흥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도입
1987.12.	국민은행, 폼뱅킹서비스 개시
1988. 7.	CD공동망 가동
1989. 4.	ARS공동망 가동
1989.12.	타행환공동망
1990. 7.	조흥은행, 무인자동화코너 설치
1991. 8.	신한은행, PC뱅킹(홈뱅킹) 서비스 개시
1991.11.	국민은행, 텔레뱅킹서비스 개시
1992. 3.	금융공동망센터와 SWIFT(1992. 3), 경찰전산망(1993. 2), 무역자동화망(1994. 1)과 연결
1994.12.	한은금융망(BOK-WIRE) 가동
1996. 2.	직불카드 발급 개시 및 직불카드공동망 가동
1996. 8.	CMS공동망 가동
1997. 1.	신용정보 공동이용망 가동, 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 개시(기타)
1997. 6.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가동
1998. 6.	국민카드, 후불 교통신용카드 서비스 개시(카드)

1)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ubiquitous.

1999. 7.	인터넷뱅킹서비스 제공 개시 (신한, 한미, 주택, 평화, 제일, 외환, 기업, 평화, 광주, 농협 등 국내 은행이 뱅크타운(Banktown)을 통해 공동으로 제공) 신한은행, 인터넷대출서비스 개시
1999. 8.	조흥, 국민은행 등이 독자적인 인터넷뱅킹서비스 제공 개시
1999.10.	한미은행, 모바일뱅킹서비스 개시
1999.12.	평화은행 선불카드 이니페이 발행
2000.12.	전자화폐(K-Cash) 시범사업 실시(~12월)
2000. 9.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yessign) 공인인증 시범서비스 개시 마이비, 디지털부산카드 상용서비스 개시(기타)
2000.11.	자기앞수표 및 4대 징수기관 수납장표 정보화 완료
2000.12.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Payment Gateway) 가동
2001. 2.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도입
2001. 4.	전자금융공동망 가동
2001.12.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 구축
2001. 9.	물품대금 무선결제시스템 가동
2001.12.	표준OCR장표 인터넷조회시스템 가동
2002. 2.	은행공동망과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전산망간 접속
2002. 7.	전자화폐(K-Cash) 교통카드 상용서비스 실시(김해, 춘천)
2002. 9.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시스템 가동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 CD/ATM을 통한 지로 및 공과금 납부 실시
2003. 6.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의 인터넷지로 참가
2003. 9.	내국신용장 어음의 결제방식 개선 및 온라인조회시스템 구축
2004. 8.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
2004.10.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
2004.12.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한국스마트카드, T-money출시(선불)
2005. 7.	은행공동 모바일지급결제(Ubi)서비스 개시
2005. 9.	전자어음 관리시스템 구축 은행공동 e-L/C관리시스템 구축
2007.10.	CD공동망과 전자금융공동망 운영시간 확대
2007.12.	타행 CD/ATM기의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 공과금 무인수납기 공동이용 실시
2008.12.	유비터치(UbiTouch)서비스 개시
2009. 4.	신한은금융망(BOK-Wire+) 가동
2009.10.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 대상 약속어음 및 당좌 가계수표 전자정보교환 실시
2010. 4.~9.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시스템 은행권 공동 구축
2010.11.	어음 · 수표의 전자정보교환 전국 확대 실시
2010.12.	국가간 ATM망 연계 서비스 시범 실시(말레이시아 대상)
2011. 1.~8.	국가간 ATM망 연계 서비스 확대 실시(미국, 필리핀, 베트남)

자료: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총람, 한국은행, 253-257쪽(2009. 5.)과 2010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한국은행, 190-193쪽(2011. 9.) 재구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결제는 얼마나 실체적으로 전자화되었는가?'라는 질문은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전자지급결제 발전의 역사와 지급결제의 전자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배경에는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기준을 금융정보망의 고도화 등 환경적 요인이 아닌 지급수단의 이용 측면에 주목하여 특히 지급수단이 처리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급수단 자체의 성격까지 고려할 때 지급결제의 전자화 또는 정보화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진행도 더딜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의 중심에는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건재함을 시사하는 정황증거들이 있다. 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지급수단으로의 흡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음, 수표와 달리 현금을 선호하는 오랜 상거래관습과 전자지급채널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장벽은 현금의 전자지급수단으로의 흡수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급수단의 처리방식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본질적인 성격도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전통적인 관점보다 좀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으로 비대면 지급채널로 간주되어온 CD/ATM이 현금, 수표와 같은 비전자적 지급수단의 확산 경로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비대면 채널의 비중 증가는 비현금 지급수단의 확산과 동의어가 아님을 시사한다.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러한 관점이 지급결제의 전자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어온 현금의 건재함을 고려함으로써 실체적인 전자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자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달려온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지급결제 정책수립을 위한 중간점검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2. 논의의 방향과 범위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된다. 실체적인 관점에서의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의 진행단계에 대한 서로 다른—그러나 상호 연관성이 깊은—기존의 두개의 시각을 소개하고 그중 이용자들에 의해 수용되는 지급수단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가늠하는 입장을 취한다.

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되어 가용한 지급수단의 이용실태에 관한 통계가 1) 국내 전체의 지급결제를 대상으로 측정되지 않고, 2)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대한 증거로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을 논의한 후 현금에 대한 선호경향과 실질적으로 현금이 여전히 지급수단으로서 건재함을 시사하는 몇가지 정황증거들을 제시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급결제의 전자화가 실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추측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이와 더불어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대한 법률적 관점은 지급수단의 성격이 아닌 지급수단의 처리 방식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규율대상의 포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는 적절하나,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측정 측면에서는 전자화를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안적 시각으로 지급수단의 성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힌다.

소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살펴본 지난 40여년의 꾸준한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대표되는 비전자적 지급수단의 전자지급수단으로의 대체가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지급결제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수성에 기인하며 이는 전자지급결제의 전자화를 추진함에 있어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함을 간략히 밝힌다.

본고에서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정도를 논의하나 전자화의 정도 자체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자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가용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II.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대한 관점

지급결제의 전자화 또는 정보화의 측정은 그 목적과 측정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넓게 보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전산 관련 직원, 예산, 기기의 비중을 통해 향후 전자 지급결제서비스의 확산의 잠재력을 살펴보거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 지급결제서비스나 지급채널의 종류와 수 등을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진행 또는 발달정도에 대한 관점으로 일반성을 가지고 정립되어 온 것은 크게 금융정보망의 고도화를 기준으로 하는 관점과 전자적인 지급수단의 이용 비

중의 확산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이다.[2] 두개의 관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오늘날의 전자지급결제제도에서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나 전자의 관점은 인프라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각이 강조된 것인 반면, 후자의 관점은 최종적으로 이용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지급수단의 실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시각에서 지급결제를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인프라/서비스 제공자의 시각: 금융정보망의 고도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서비스를 광의의 금융서비스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전자지급결제(⊂전자금융)의 발달이 금융정보망의 고도화(또는 금융정보화)[3]에 따라 네 개의 국면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4]

구체적으로 각 국면은 개별 금융기관이 장표처리를 자동화하여 창구업무를 효율화하고 본지점간 내부 전산망을 구축하는 제1단계(업무자동화), 금융기관간 전산망을 상호연결하는 금융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금결제 기능면에서 하나의 조직과 같이 긴밀히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전국을 1일 결제권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개발"하는 제2단계(네트워크화),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물리적 접촉 없이 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물리적인 점포 없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은행(virtual banking)"[5] 또는 가상세계에서의 지급수단으로서 전자화폐가 등장하는 제3단계(서비스 채널의 다양화), 누적된 고객정보와 거래기록 DB를 기반으로 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하는 마지막 단계(지식정보산업화)가 그것이다(그림1 참조).[6]

2) 중앙은행을 비롯한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들에 의해 집계 · 공표되는 전자지급결제 관련 통계의 각 세부항목은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가늠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집된다고 보는 시각에 근거한다.

3)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를 광의의 개념으로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거래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융정보를 수집, 처리, 창출하거나 전달하는 데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 "특히 9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디지털 정보기술이 기존의 금융제도와 금융구조에 접목되는 현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금융결제국(2011. 9.b), 3쪽 참조).

4)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총람, 한국은행, 6쪽(2009. 5.).

5) 인터넷전업은행(Internet-only bank) 역시 최소한의 물리적 점포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물리적 점포의 완전한 배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개념적으로만 가능하다.

6) 금융결제국(2009. 5.), 6-7쪽; 금융결제국(2011. 9.b), 3-4쪽.

〈그림1〉 전자금융의 발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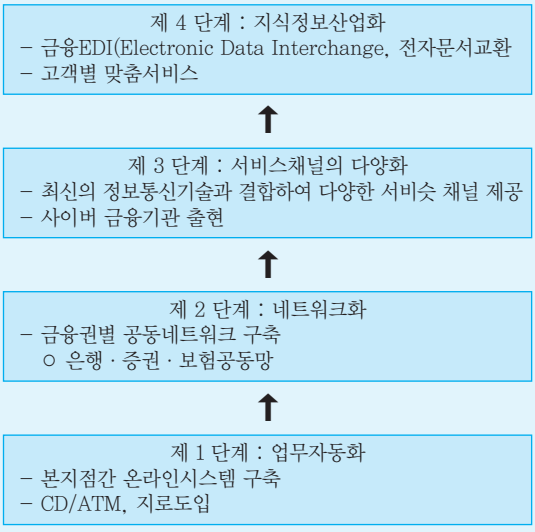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국(2009. 5.), 7쪽.

이러한 구분을 우리나라의 금융정보화의 역사에 적용해보면 제1단계의 시작은 국내 최초의 현금자동지급기(CD) 서비스[7]와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본점과 영업점간 계정과목별 전산망 구축을 시작한 1970년대 중 · 후반으로, 제2단계의 시작은 개별 은행의 본지점간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는 한편 국내 최초의 금융공동망인 CD공동망이 구축된 198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8] 제3단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World Wide Web과 웹브라우저의 대중화를 발판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정보화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면서 은행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급채널의 개발 · 보급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국내 최초의 인터넷뱅킹서비스[9]가 등장한 1990년대 후반과 인터넷 기반 채널을 통합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의 가동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전자지급결제는 고도화된 금융정보망을 이용하여 단일 금융기관의 지점간은

7) 금융결제국(2009. 5.), 21쪽("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8월 한국외환은행이 미국 NCR로부터 도입한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한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효시이다. 한편 ATM서비스의 경우 1984년 7월 조흥은행이 처음으로 개시하였다.").

8) 금융결제국(2011. 9.b), 7–9쪽.

9) 자금이체 등 실제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뱅킹을 기준으로 하였다. 금융결제국(2009. 5.), 61쪽 참조("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은행들이 각종 금융상품정보의 제공, 홍보 등에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나, 자금이체 등 실제거래를 위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통신 커머스솔루션즈(KT Commerce Solutions)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인 '뱅크타운(Banktown)'을 이용하여 1999년 7월에 신한, 한미, 주택은행 등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물론 복수의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거래를 통신기능을 갖춘 거의 모든 단말기를 통해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식 금융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전자지급결제의 발달단계에 대한 구분을 따른다면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인다.[10)]

이와 같이 전자지급결제의 발달 또는 진척도를 구분함에 있어 그 기준을 금융정보망의 고도화—즉, 지급결제인프라의 구축과 그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또는 전달방식—를 지급결제의 전자화 또는 정보화의 진행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급결제제도의 장치산업,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기간망(socioeconomic infrastructure)[11)]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가 장치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각국의 우정사업기관이 금융업을 겸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입증하는데[12)] 우정사업과 금융업의 겸업이 많은 배경에는 1) 지급결제제도가 금융의 하부구조로서 금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한편, 2) 과거 지급결제제도가 물리적 수송을 필수로 하는 장표 기반의 지급수단을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 성격에 더하여 오늘날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장치산업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로 '금융정보망'과 '지급수단', 또는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지급결제서비스의 전자화'가 동의어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화될 정도로 전자지급결제는 금융정보망의 고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도화된 금융정보망은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정보망의 구축과 보급이 필연적으로 이용자에 의한 수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정보의 고도화 정도에 기초하여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발달단계를 측정하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의 시각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수많은 신규 서비스가 점멸하듯 나타났다 사라지는 전자지급결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아무리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 물적 자원을 갖추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엄밀한 관점에서 그것들

10) 금융결제국(2009. 5.), 7쪽("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금융네트워크 구축단계를 거의 끝내고 IC칩, 암호화기술, 가상현실기법 등의 정보처리기술과 무선통신, 인터넷,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금융서비스 전달채널을 다양화해 나가는 제3단계를 대부분 완료하고, 금융정보DB 구축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시의 적절히 제공하는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제4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기간망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확장성과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의 집합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운영하는 인력과 규칙 등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2) 이러한 사례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과거의 독일 등이 포함된다. 류근옥, 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겸업화 추세와 우정사업에 주는 시사점, 우정정보 73, 우정경영연구소, 87쪽(2008 여름) 참조("우체국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는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의 우편 서비스가 겸업으로 허용되는 것은 OECD 국가의 다수 사례로 해석된다.") 참조.

은 환경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들이 이용자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 한 실체적인 전자화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정보망의 고도화는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파악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다.

2. 인프라/서비스 이용자의 시각: 지급수단의 이용 실태

지급수단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시각에 대한 대체안이 된다. 이러한 시각은 실질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진척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실물 및 금융거래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지급수단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에 의해 실제로 수용되는 지급수단의 성격과 그것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금융정보망의 고도화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보다 직관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최첨단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가 발굴되어 서비스로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수용되리라는 공급자들의 기대와 이용자들의 관습 사이에 존재해온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간극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전자지급결제 환경이 머리와 몸통은 21세기에 들어선 반면 꼬리는 20세기의 중 · 후반부에 걸쳐있는 거대한 유기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는 것으로 현시(顯示)되는 결과에 주목하는 결과론적 또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 · 경제 · 문화적 산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입장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실체적 전자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본고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전자화의 실체성

가. 비현금 지급수단의 전자화 ≠ 현금의 비현금 지급수단화

지급수단의 이용실태를 기반으로 전자화의 진행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접근방법은 소액지급수단의 장표와 전자방식간 비중을 비교하는 것으로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소액지급수단 중 전자적인 방식의 지급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중 일평균 건수 기준으로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소액지급수단별 결제규모(일평균) 추이**

(단위: 천건, 십억원, %)

지급수단	2009년중		2010년중		증감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장표방식	3,835 (12.0)	21,601 (43.0)	3,261 (9.1)	23,210 (41.6)	△15.0	7.4
어음 · 수표[주1)]	2,554	21,343	2,052	22,940	△19.7	7.5
지로일반계좌이체	1,281	258	1,209	270	△5.6	4.7
전자방식	27,991 (88.0)	28,580 (57.0)	32,691 (90.9)	32,575 (58.4)	16.8	14.0
자금이체[주2)]	11,373	27,198	12,440	31,073	9.4	14.2
카드 등[주3)]	16,618	1,381	20,251	1,501	21.9	8.7
합 계	31,826	50,181	35,952	55,785	13.0	11.2

주1) 전자어음 및 발행창구제시어음 제외
주2) 지로관리시스템(일반계좌이체 제외),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ATM 계좌이체,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전자어음
주3)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주4) ( )내는 구성비

자료: 금융결제국(2011. 9), 10쪽.

다만,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급수단의 방식간 비중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수치가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지급결제중 전자방식 결제수단의 비중"[13)]이라는 점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지급결제란 금융정보망을 경유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드의 경우 카드승인 정보를 전송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을, 어음 · 수표, 지로, 계좌이체의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지급결제거래를 포함한다.[14)]

금융정보망을 경유하는 거래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것은 지급수단에 따라 거래의 포함범위를 다르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카드결제 경우 은행간 거래와 자행내 거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국내 모든 VAN 운영사를 경유하는 거래가 집계되어 이는 국내 전체에서 발생한 카드결제를 반영하는 반면 어음 · 수표와 계좌이체의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경유하는 은행간 거래만을 반영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90.9%라는 전자방식 비중은 국내 전체 지급결제거래 전자화의 척도가 아닌 금융정보망을 통한 지급결제거

13) 금융결제국(2011. 9.b), 10쪽.
14) 금융정보망,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은행공동망, 금융공동망간 개념적 위계는 아래와 같다.
– 금융정보망: 소액지급결제시스템 ∪ 기타네트워크(e.g., VAN, etc.)
– 소액지급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은행공동망 ∪ 어음교환소)
– 은행공동망: 금융공동망 ∪ 기타시스템(지로시스템 ∪ e사업 관련시스템)

래의 전자화의 진척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진척 정도를 이용실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체의 지급결제거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자행내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전자화의 진척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예로 표2의 어음 · 수표의 경우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을 거치지 않는 발행창구제시어음을 포함하지 않는데 2010년 중 발행창구제시어음 처리건수(2억 3,407만건)[15]가 장표방식 어음 · 수표의 총 결제(7억 4,757만건)[16]의 31.3%에 달한다는 점에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비중을 과소 계상하는 반면 자금이체 역시 전자금융공동망, CD공동망 등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경유하는 은행간 지급결제거래만을 반영[17]하고 있어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비중을 과소 계상하는 측면이 있다. 발행창구제시어음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는 어음 · 수표와 달리 전자지급채널을 통한 자행내 지급결제거래의 경우 별도의 공개된 통계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표3〉 텔레뱅킹 업무별 이용실적

(단위: 천건, %)

구 분	정보조회	대출신청	기타	비자금이전 서비스 소계	자금이체	자금이전 거래 소계	계
2006	927,127	771	67,396	995,294	386,127	386,127	1,381,421
	67.1	0.1	4.9	72.0	28.0	28.0	100.0
2007	1,061,304	140	73,652	1,135,096	395,638	395,638	1,530,734
	69.3	0.0	4.8	74.2	25.8	25.8	100.0
2008	970,390	666	58,995	1,030,051	417,057	417,057	1,447,108
	67.1	0.0	4.1	71.2	28.8	28.8	100.0
2009	1,834,382	3,461	48,778	1,886,621	415,980	415,980	2,302,602
	79.7	0.2	2.1	81.9	18.1	18.1	100.0
2010	1,704,687	3,064	67,030	1,774,781	409,497	409,497	2,184,278
	78.0	0.1	3.1	81.3	18.7	18.7	100.0

자료: 금융결제국(2011. 9.b), 138쪽 재구성.

15) 금융결제원 내부 통계를 참고하였다.

16) 국내 총 어음 · 수표 결제건수(7억 5,200만건)에서 전자어음(365만건)과 전자채권(78만건)을 제외한 수치임. 어음 · 수표 총 결제건수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산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가 발간하는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Figures for 2010('Red Book'), 423쪽(2012. 1.)을, 전자어음과 전자채권 결제건수는 금융결제원 내부통계를 참고하였다.

17) BIS Red Book에 게재되는 한국의 입금이체(credit transfers)와 출금이체(debit transfers) 통계 역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경유하는 거래만을 반영하고 있다.

전자방식과 장표방식 지급수단간 비중의 변화폭을 추정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나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에 나타난 2010년 중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실적은 각각 4억 949만건과 15억 1,914만건으로 동 실적은 자행내 거래와 은행간 거래의 구분 없이 해당 지급채널을 기준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공동망[18]을 경유하는 은행간 거래까지 포함하고 있다(표 3, 4, 5 참조).[19] 이들 수치의 합은 전자금융공동망을 경유하는 자금이체 거래규모 17억 5,871만건[20]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데 거래규모 측면에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처리되는 자금이체 거래의 주요 지급채널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 채널을 통한 자금이체의 상당수는 은행간 거래라고 추정할 수 있다.[21]

〈표4〉 **인터넷뱅킹 업무별 이용실적**

(단위: 천건, %)

구 분	정보조회	대출신청	기타	비자금이전 서비스 소계	자금이체	자금이전 거래 소계	계
2006	3,867,448	693	N/A	3,868,141	804,614	804,614	4,672,755
	82.8	0.0	N/A	82.8	17.2	17.2	100.0
2007	5,528,577	723	N/A	5,529,300	997,622	997,622	6,526,922
	84.7	0.0	N/A	84.7	15.3	15.3	100.0
2008	6,989,364	895	N/A	6,990,259	1,218,298	1,218,298	8,208,557
	85.1	0.0	N/A	85.2	14.8	14.8	100.0
2009	8,435,651	737	N/A	8,436,388	1,249,919	1,249,919	9,686,307
	87.1	0.0	N/A	87.1	12.9	12.9	100.0
2010	10,779,414	458	N/A	10,779,872	1,519,149	1,519,149	12,299,021
	87.6	0.0	N/A	87.6	12.4	12.4	100.0

주) 모바일뱅킹 이용실적 포함.

자료: 금융결제국(2011. 9.b), 141쪽 재구성.

18) 전자금융공동망에서 처리되는 업무에는 '1369'번으로 전화하여 각종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대고객 서비스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 홈 · 폼뱅킹 중계서비스가 있다.

19)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행내 거래 및 은행간 거래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A 은행 → A 은행(30만원 이체 via 인터넷뱅킹)
A 은행 → B 은행(100만원 이체 via 인터넷뱅킹)
A 은행 ← B 은행(50만원 이체 via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A은행 자체 시스템: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2건 … (1)
B은행 자체 시스템: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1건 … (2)

(1)과 (2)를 합산한 수치가 '2010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141쪽)이라면 이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루어진 전체 자금이체 거래를 포함하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 금융결제원 내부 통계를 참고하였다.

21) 자금이체 외에 조회건수까지 이용실적에 포함시킬 경우 전자금융공동망을 경유하지 않는 자금이체 및 조회는 전체의 85%를 상회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표5〉 모바일뱅킹 업무별 이용실적

(단위: 천건, %)

구 분	정보조회	기타	대출신청	비자금이전 서비스 소계	자금이체	자금이전 거래 소계	계
2006	133,789	N/A	N/A	133,789	28,984	28,984	162,773
	82.2	N/A	N/A	82.2	17.8	17.8	100.0
2007	218,378	N/A	N/A	218,378	42,780	42,780	261,158
	83.6	N/A	N/A	83.6	16.4	16.4	100.0
2008	328,872	N/A	N/A	328,872	58,244	58,244	387,115
	85.0	N/A	N/A	85.0	15.0	15.0	100.0
2009	533,697	N/A	N/A	533,697	94,478	94,478	628,175
	85.0	N/A	N/A	85.0	15.0	15.0	100.0
2010	1,216,443	N/A	N/A	1,216,443	146,949	146,949	1,363,392
	89.2	N/A	N/A	89.2	10.8	10.8	100.0

자료: 금융결제국(2011. 9.b), 142쪽 재구성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CD/ATM 채널을 통한 자행내 자금이체 거래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에 수록된 '설치장소별 CD/ATM 이용실적'[22]은 CD/ATM을 통한 국내 전체 거래규모로 추정되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과 달리 자금이체, 정보조회 등 업무별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3]

CD/ATM을 통한 자행내 거래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추정 대신 정황을 유추를 해보면 국내 은행권은 대부분의 지급채널에서 자행내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은행간 거래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표6 참조)에서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자행내 거래[24]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음 · 수표의 발행창구제시어음 반영에 따른 장표방식 지급수단 비중의 증가분과 자행내 자금이체 거래 반영에 따른 전자방식 지급수단 비중의 증가분은 대부분 상쇄되어—상쇄 정도는 자행내 거래규모에 대한 가용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추정에 한계가 있다—소액지급수단은 표2의 전자

22) 금융결제국(2011. 9.b), 146쪽.

23)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이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전자금융총람'은 국내 지급결제통계를 담은 발간물 중 유일하게 자행내 거래와 은행간 거래를 구분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자금이체뿐만 아니라 조회를 포함한 모든 이용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결제국(2009. 5.), 29-30쪽 참조("자행거래를 포함한 CD/ATM 총이용건수는 2007년중 40억 3,063만건(일평균 1,101만건)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다. 이중 자행내 온라인 거래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34억 4,034만건으로 전체거래의 85.4%를 차지하였다.").

24) 그러나 자행이체와 타행이체간의 수수료 차이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채널보다 CD/ATM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표6 참조)에서 자행내 지급결제거래의 비중은 CD/ATM 채널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방식 지급수단의 비중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6〉 **국내 은행권의 송금 수수료**

(단위: 원)

은행	창구이용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RS이용시)		모바일뱅킹	
			자행이체		타행이체							
	자행 이체	타행 이체	마감전	마감후	마감전	마감후	자행 이체	타행 이체	자행 이체	타행 이체	자행 이체	타행 이체
SC제일	1,500	3,000	면제	면제	1,000	1,5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경남	면제	1,500	면제	면제	700	9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광주	면제	1,500	면제	면제	1,000	1,600	면제	500	면제	600	면제	500
국민	면제	500	면제	면제	500	5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기업	면제	500	면제	면제	500	5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농협	면제	500	면제	면제	500	8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대구	1,500	2,000	면제	면제	500	75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부산	면제	1,000	면제	면제	500	1,0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산업	면제	1,500	면제	면제	600	600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수협	면제	1,500	면제	면제	1,000	1,5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신한	면제	600	면제	면제	500	6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외환	1,500	3,000	면제	면제	500	6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우리	면제	1,000	면제	면제	500	75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전북	면제	2,000	면제	면제	900	1,3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제주	면제	1,500	면제	면제	600	7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하나	면제	600	면제	면제	500	7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한국씨티	1,000	2,000	면제	600	1,000	1,600	면제	500	면제	500	면제	500

주) 10만원 거래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2011.12. 1 기준)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비중을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실제적인 척도로 사용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수치가 비현금 지급수단 중 장표방식인 어음 · 수표, 장표지로가 전자방식(비현금)[25] 지급수단인 카드와 계좌이체로 흡수되는 경향, 즉 '비현금 지급수단 내에서의 전자화 경향'을 의미할 뿐 전자방식 지급수단에 의한 현금의 흡수 · 대체를 반영하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음, 수표가 계좌이체, 카드 등 전자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대체되는 것은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일면임이 분명하나 현금은 장표방식 비현금 지급수단과 마찬가지로 소지

25)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지급수단은 모두 비현금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전자지급수단을 '비현금'이라는 용어로 수식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현금과 대비되는 지급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와 보관비용이 크고 원격지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지급수단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추적이 어려워 세수누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현금을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급결제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상의 목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금의 이용에 대한 고려 없이 비현금 지급수단 내에서의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 자체만으로는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척도로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몇가지 통계는 현금이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 현금의 건재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현금 지급수단내에서의 전자화는 비교적 확연히 관찰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비현금 지급수단과 현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전자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거래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의 특성상 어렵다.

현금이용 정도를 가늠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화폐공급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말 현재 본원통화(M0)에서 지급준비금을 뺀 화폐발행잔액은 43조 3천억원으로 2006년말의 27조 8천억원보다 15조 5천억원 증가(55.5%)하였고, 이중 각 은행의 시재금을 뺀 민간보유 현금 역시 GDP와 협의통화(M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발행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기간 중 인플레율을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현상은 명목 경제규모의 성장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5만원권 고액권 발행으로 인해 현금 휴대가 간편해짐에 따라 증대된 민간의 현금보유 성향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2010년말 현재 5만원의 발행잔액은 2009년말 대비 91.4% 증가하여 지폐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서 9.9%로 증가한 반면 유통량이 감소한 1만원권은 같은 기간 중 동 비중이 59.2%에서 52.3%로 감소하였다.

〈표7〉 주요 권화종별 발행잔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년 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총계	27,843,113	29,321,854	30,758,260	37,346,212	43,307,163	55.5	11.7
지폐	26,183,604	27,540,872	28,915,163	35,414,582	41,280,991	57.7	12.1
50000원권	–	–	–	9,922,992	18,996,243	91.4주2)	91.4
10000원권	23,923,102	25,306,524	26,699,942	23,259,166	20,012,191	−16.3	−4.4
5000원권	1,153,133	1,058,013	1,033,312	1,018,191	1,016,731	−11.8	−3.1
1000원권	1,093,854	1,162,821	1,168,395	1,200,720	1,242,314	13.6	3.2
주화	1,562,544	1,683,037	1,742,640	1,830,209	1,921,737	23.0	5.3
500원화	756,395	825,365	854,155	905,987	958,150	26.7	6.1
100원화	657,869	703,958	730,646	762,063	796,676	21.1	4.9
50원화	86,290	89,065	90,879	93,272	95,815	11.0	2.7
10원화	60,353	63,012	65,323	67,251	69,460	15.1	3.6

주1) 기말잔액 기준
주2) 2009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재구성

〈표8〉 민간 보유현금의 GDP 및 협의통화(M1) 대비 비중

(단위: %)

구 분	GDP 대비					협의통화(M1) 대비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민간 보유현금 (Banknotes and coin in circulation)	3.05	3.00	2.99	3.50	3.68	7.48	9.24	9.27	9.56	10.10

주) 말잔 기준

자료: BIS Red Book(2012. 1.), 417쪽.

현금선호 경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지급수단 이용선호도를 조사한 설문으로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현금에 대한 만족도가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의 대표적인 전자지급채널을 통한 계좌이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참조).

〈그림2〉 지급수단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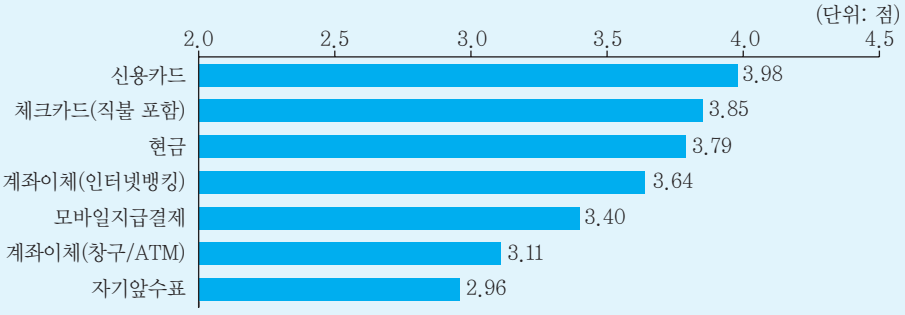

주) 각 지급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1~5점으로 응답

자료: 금융결제국, 2010년도 지급수단 이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행(2010.12.)

특히, 2005년과 2010년의 거래금액대별 최선호 지급수단의 선호도를 비교해보면 구매금액대에 상관없이 계좌이체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반면 여타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그림3 참조).

〈그림3〉 금액대별 지급수단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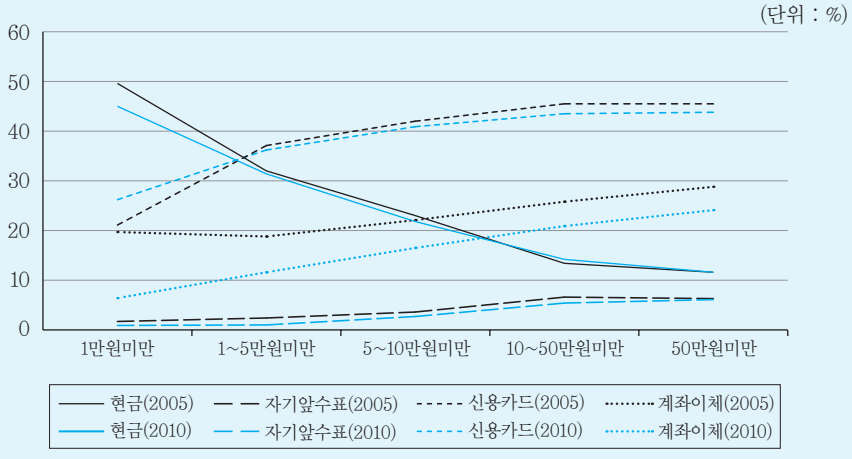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국, 지급결제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2005.12.), 금융결제국(2010.12.) 재구성

카드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지급수단으로서 모바일 채널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거래에서의 현금선호 경향은 일부 카드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조사시점의 시간차를 고려할 때 보수적인 시각

에서 본다면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서 여전히 이용자의 절반가량(45.0%)은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현금을 최선호하는 한편, 1만원 이상의 금액대에서도 2005년 대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의 현금선호 성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9〉 **금액대별 지급수단 선호도**

(단위: %)

구 분	1만원 미만		1~5만원		5~10만원		10~50만원		50만원 이상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현 금	49.6	45.0	32.0	31.4	23.0	21.8	13.4	14.2	11.6	11.6
자기앞수표	1.7	0.9	2.4	1.0	3.6	2.7	6.6	5.4	6.3	6.1
카 드	–	41.2	–	53.6	–	57.8	–	58.7	–	57.3
신용카드	21.1	26.2	37.1	36.2	42.0	40.9	45.5	43.5	45.5	43.8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	–	14.6	–	17.0	–	16.5	–	14.5	–	13.0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	0.4	–	0.4	–	0.4	–	0.7	–	0.5
계좌이체	19.7	6.4	18.8	11.6	22.1	16.5	25.8	20.9	28.8	24.1
인터넷뱅킹	–	4.7	–	9.0	–	12.4	–	15.3	–	17.5
창구방문 및 ATM	–	1.7	–	2.6	–	4.1	–	5.6	–	6.6
핸드폰결제	–	6.5	–	2.5	–	1.2	–	0.9	–	0.9
계	92.1	100	90.3	100	90.7	100	91.3	100	92.2	100

주1) 구매금액대별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지급수단 3가지에 대해 점수(1~3점)를 부여
주2) 2005년 세부통계는 비공개

자료: 금융결제국(2005.12.), 금융결제국(2010.12.) 재구성

이러한 현금선호 성향은 현금소지 규모로 확인되는데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6.5만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40대 이상의 현금소지 규모가 두드러졌다.

〈그림4〉 **현금소지 규모**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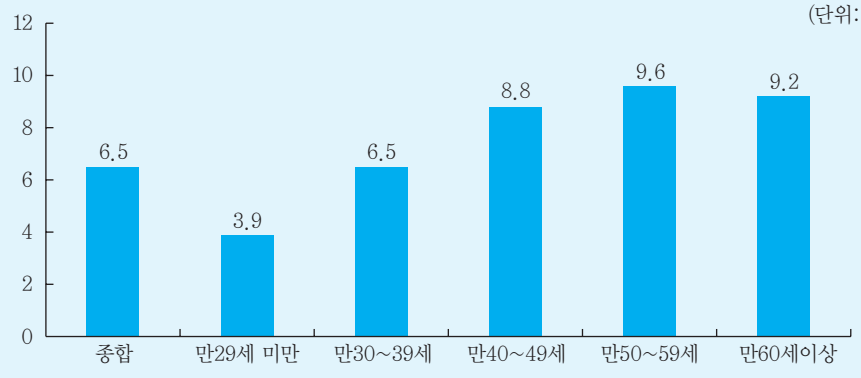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국(2010.12.)

지급채널별 입출금 및 자금이체 처리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금선호 성향이 현금이 전자지급수단으로의 흡수 · 대체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0은 은행간 거래와 자행내 거래 구분 없이[26] 지급채널별 입출금거래와 자금이체 거래 처리비중 추이로 2005년 12월~2011년 9월중 기간 중 인터넷뱅킹의 비중 증가(18.6%→36.3%)와 창구비중 감소(26.3%→12.1%)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국내 은행권이 수수료 체계를 바탕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창구에서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등의 비대면 채널로 유도해온 결과를 반영한다.

〈표10〉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비중(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기준)

(단위: %)

구 분	대면거래 (창구거래)	비대면 소계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합계
2005.12월중	26.3	73.7	42.8	12.3	18.6	100.0
2006. 3월중	26.0	74.0	43.6	12.3	18.1	100.0
2006. 6월중	25.3	74.7	42.5	12.1	20.1	100.0
2006. 9월중	24.0	76.0	43.2	12.2	20.6	100.0
2006.12월중	22.1	77.9	43.9	12.2	21.8	100.0
2007. 3월중	21.7	78.3	44.7	11.4	22.2	100.0
2007. 6월중	21.6	78.4	45.0	11.1	22.3	100.0
2007. 9월중	20.6	79.4	45.2	11.3	22.9	100.0
2007.12월중	20.4	79.6	44.5	11.4	23.7	100.0
2008. 3월중	19.8	80.2	44.3	11.5	24.4	100.0
2008. 6월중	19.7	80.3	43.5	11.4	25.4	100.0
2008. 9월중	19.5	80.5	42.5	10.9	27.1	100.0
2008.12월중	17.3	82.7	42.3	11.3	29.1	100.0
2009. 3월중	14.7	85.3	39.2	13.2	32.9	100.0
2009. 6월중	14.1	85.9	39.0	12.3	34.6	100.0
2009. 9월중	13.6	86.4	38.0	12.2	36.2	100.0
2009.12월중	13.7	86.3	36.7	12.2	37.4	100.0
2010. 3월중	13.8	86.2	39.5	13.1	33.6	100.0
2010. 6월중	13.3	86.7	39.6	13.0	34.1	100.0
2010. 9월중	13.7	86.3	39.3	12.6	34.4	100.0
2010.12월중	14.3	85.7	38.8	12.2	34.7	100.0
2011. 3월중	13.6	86.4	39.8	12.4	34.2	100.0
2011. 6월중	12.6	87.4	39.2	12.8	35.4	100.0
2011. 9월중	12.1	87.9	39.1	12.4	36.3	100.0

주1) 입출금거래는 입금, 출금, 자금이체 등의 실적을 포함
주2) 2010.3~2011.6월중 수치는 일부 은행의 자료수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치임

자료: 금융결제국, 연중 및 분기별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재구성

26) 따라서 국내 은행간 거래와 자행내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금융결제국(2009. 5.), 65쪽 참조.

〈그림5〉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비중(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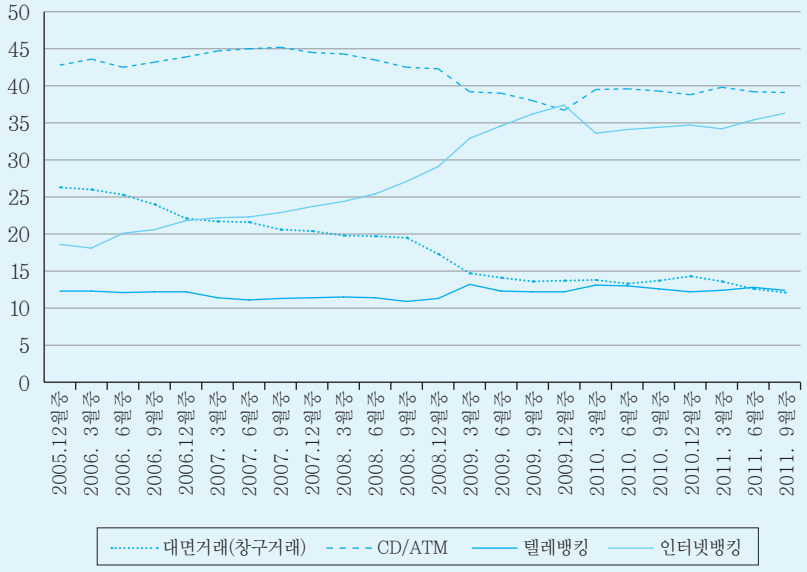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국, 연중 및 분기별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재구성

주목되는 것은 지난 5년여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한 인터넷뱅킹의 비중과 대조적으로 CD/ATM을 통한 입출금거래 및 자금이체 거래 비중은 42.8%에서 39.1%로 소폭 감소하여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 9월 현재 CD/ATM(39.1%)이 입출금과 자금이체 거래 채널 중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출금거래와 자금이체거래의 합계만 가용하여 각각의 거래유형별 비중에 대한 추정은 정황적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CD/ATM을 통한 거래 비중(39.1%)의 상당 부분은 현금출금거래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은 1)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은 자금이체 위주의 거래채널로 자리잡은 반면, CD/ATM은 비대면 채널 중 입출금이 가능한 유일한 채널이라는 점에서 입출금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채널로 이용되는 경향, 2) 외국 은행들의 자체조사결과,[27] 3) 외국과 우리나라 고객의 수수료 회피 성향으로 인하여

27) 장진성, ATMS의 도입효과와 활용방향,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15호, 금융결제원, 32쪽(2004. 1.)("ATM 이용에 있어서의 고객의 최우선 관심사는 최단시간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Wells Fargo가 ATM 광고 서비스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자체조사(2000)를 한 결과 고객들은 ATM에서 금융상품 광고뿐만 아니라 주식시세, 날씨, 개봉 영화 리뷰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거래시간 지연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업계 전반에 인식되면서 이를 계획하고 있던 Wells Fargo, Bank of America 등은 광고시간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Wells Fargo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ATM 거래의 상당 목적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며 거래시간은 평균 45초였다."); Bank ATM Executive

CD/ATM을 통한 거래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표11 참조).

〈표11〉 **국내 은행권의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단위: 원)

은행	같은은행에서 인출시		다른은행에서 인출시	
	마감전	마감후	마감전	마감후
국민	면제	500	600	900
기업	면제	면제	700	700
산업	면제	면제	700	900
신한	면제	500	700	900
외환	면제	500	700	900
경남	면제	600	700	800
광주	면제	300	700	800
제주	면제	500	700	900
우리	면제	600	700	800
대구	면제	500	700	800
전북	면제	300	800	1,000
한국씨티	면제	600	800	1,000
농협	면제	500	800	1,000
하나	면제	600	900	1,000
수협	면제	500	1,000	1,200
부산	면제	600	1,000	1,200
SC제일	면제	600	1,000	1,200

주) 10만원 거래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2011.12. 1 기준)

거래유형별 세부통계가 가용한 CD공동망의 거래유형이 국내 전체의 CD/ATM을 통한 거래를 대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비조회성 거래 5억 3,867만건 중 현금출금, 현금입금, 계좌이체는 각각 45.2%(2억 4,370만건), 1.5%(817만건), 46.5%(2억 5,045만건)으로 현금입출금과 계좌이체는 비등한 비중을 갖게 되어 CD/ATM을 통한 거래 중 자금이체를 제외한 현금입출금 비중은 전체의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

Summary, ATMmarketplace.com, 2005(http://www.atmmarketplace.com/article_print/133798/The-evolution-of-CRM), 장진성, 지급결제단말기를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 동향과 이슈,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2호, 금융결제원, 41쪽(2005.10.)에서 재인용("싱가포르의 OCBC Bank 역시 자행 ATM 이용고객의 거래유형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현금인출이었고 평균 거래시간은 30초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ATM에서 은행간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싱가포르의 경우 1988년부터 NETS가 운영하는 은행간 공동 ATM 네트워크인 ATMNETS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미국의 조사결과가 ATM에서의 자금이체서비스의 부재에 의한 현금 입출금의 비중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현금, 수표를 한꺼번에 인출해서 여러 차례에 나눠 지급거래에 사용하는 출금거래의 일반적인 특성상 출금거래 한건은 추후 발생할 다수의 현금거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확산된 현금은 입금되기 전까지 각기 다른 상대가 각각의 현금거래는 또다른 현금거래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6과 같은데 특정 시점에 retailer a가 보유하는 현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customer 1에 의한 1회의 인출은 자신이 발생시키는 현금지급거래($pay_{1a\sim e}$)는 물론 retailer a에 의해 발생되는 현금지급거래(pay_{af} 와 pay_{ag})로 연결되고 있다.

입금거래의 경우 현금, 수표를 이용한 과거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출금거래와 반대로 입금거래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의 부담을 느끼는 수준 또는 개인적으로 설정한 금액까지 누적될 때까지 입금을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입금거래 한건은 현금을 이용한 과거의 여러 차례의 지급결제거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6〉 현금거래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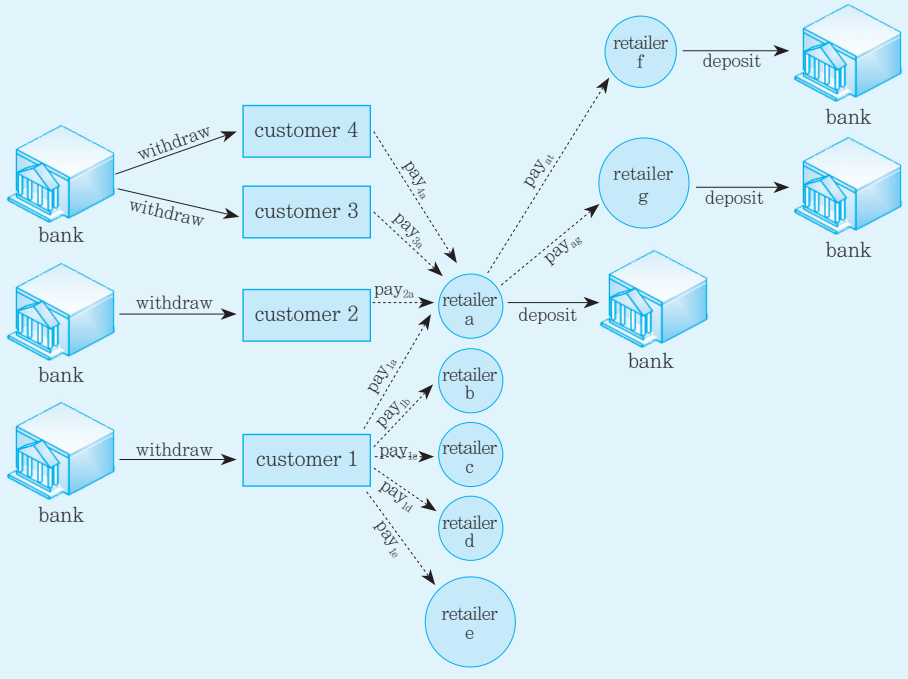

주) 추적 또는 측정이 가능한 거래는 실선으로, 그렇지 않은 거래는 점선으로 표기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CD/ATM이 지급채널로서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역설적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의 건재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창구를 통한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매우 높고 번거롭다는 점에서 창구거래의 대부분 역시 현금, 수표의 입출금이라고 가정하면 창구 비중 역시 현금의 확산 또는 수용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현금의 전자지급수단으로의 흡수 · 대체가 비현금 지급수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과 같은 최첨단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현대 지급결제제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지급수단인 현금이 갖는 독특한 성격—즉, 별도의 청산과 결제절차 없이 지급 그 자체로 거래가 완료된다는 편의성—과 오랜 기간 굳어진 상거래 관습, 정보통신기술 문맹(information technology illiteracy)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현금선호 성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전자화에 관한 보완적 시각: 지급수단의 성격에 대한 고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CD/ATM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중 현금인출 거래의 비중이 높고 한번 인출된 현금은 파생적으로 다른 현금거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전자적인 성격인 현금의 확산 채널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은 CD/ATM을 자동화된 방식의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지급채널로 분류하는 관점과 대조를 이룬다.

실체적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측정 기준으로 이용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지급수단의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대조적인 관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급수단의 처리 방식 ≠ 지급수단의 성격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정의는 전자화의 개념을 지급수단이 이용 또는 처리되는 방식에 둘 것인가 또는 지급수단의 성격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의 관점은 지급수단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에 관계없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에 의해 수용되는 지급수단의 성격과 그 비중에 주목하여 지급결제의 실체적 전자화를 측정하는 시각과 대조적이다.

전자의 관점은 규율 · 감독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가진 대부분의 법규정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으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도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는 전금법 제2조의 각호에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데 전금법은 우선 '전자지급수단'을 정의함에 있어 예시주의를 채택하여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으로 포괄하고(제11호) 다시 전자적 방법 또는 방식의 요건으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1호)와 자금의 이동서비스(제2호)가 1)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제8호)인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되고(제1호) 2) 이용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지시(제17호) 시점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제1호)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표1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27, 2008.2.29〉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규율 대상인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방식을 규정함에 있어 전자적 장치 요건과 비대면성 요건을 동시 충족 요건[28]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각 요건이 서로에 대해 필요조건 또는 충분조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러한 관계는 '전자적 장치 → 비대면'과 '비대면 → 전자적 장치'라는 두개의 논리식이 모두 참이 아님을 의미한다. 참이 아님을 입증하는—즉, 각 명제의 반례가 되는—거래유형은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계좌이체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수표 지급이 된다(표13 참조).[29]

전금법이 전자적 방식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전자적 장치 요건과 비대면 거래지시 요건

28) 전자적 방식과 두 요건의 동시충족은 서로 필요충분조건으로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전자적 방식 ⇔ 비대면 and 전자적 장치'이고 대우명제는 '~비대면 or ~전자적 장치 ⇔ ~전자적 방식'이 된다.

29) 점내 CD/ATM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계좌이체 지시를 내리는 등의 특수한 거래유형의 비대면성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

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대한 관점 정립의 근거로서 전자지급결제에 개입되는 지급수단의 본질적 성격이 아니라 지급수단이 이용 또는 처리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은 전자적 장치 요건이 본질적으로 지급수단이 전자적 성격을 지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자적 장치의 예로 CD/ATM을 포함하는 전금법 제2조제8호에 구체화되어 있는데, 1) CD/ATM을 통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현금, 수표가 개입되는 입출금거래를 포함하며, 2) 현금, 수표는 본질적으로 '비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현금, 수표가 '비전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함은 엄밀한 개념에 근거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전자적 장치를 통한 처리를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는다—즉, 전금법상의 '전자적 방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이는 곧 '비전자적 방식'이다—는 점에서 전금법이 규정하는 전자화의 개념을 적용해도 이러한 성격이 입증된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30]

위의 관점을 일반화하여 환언하면 어음, 수표, 현금 등과 같이 그 이용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를 필수로 요하지 않아 비전자적 성격을 갖는 지급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급수단을 '전자적 장치'(제8호)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로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전금법이 전자화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 지급수단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지급수단을 처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전자적 지급수단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적 규율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데, 이와 같은 포괄적 규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전자지급거래를 전자금융거래의 부분집합으로 보아 규율대상을 화폐적 가치의 이전(제2호)에 국한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1호)를 대상 서비스로 하고 있다는 점, 2) 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 있어서 예시주의를 채택(제11호)하고 있다는 점, 3) 비대면 거래지시의 의미를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오프라인 카드 가맹점 또는 점주가 그 예이다—와의 대면 여부가 아닌 지급인이 자신의 계정에서 자금의 지급을 의뢰하는 거래에서의 상대방으로서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대면 여부가 비대면성 충족의 판단 근거라는 점 등에서도 발견된다.

전금법이 전자화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31]에는 부합하는 반면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진척정도를 과다 계상하는 측

30) 즉, 전금법상 전자적 장치 요건은 전자적 방식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전자적 방식 ⇒ 전자적 장치' 표현되고, 이 대우명제는 '~전자적 장치 ⇒ ~전자적 방식'이 된다.

31) 전자금융거래법은 그 목적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금, 수표, 어음 등 비전자적 지급수단의 획득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방식 측면에서는 전자화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나, 실제 거래에 비전자적인 성격을 갖는 지급수단이 이용된다면 지급수단의 획득 · 처리 방식을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시각에 기반을 둔다.

전자화의 개념정립에 있어서 지급수단의 본질적인 성격을 고려함으로써 전금법상의 전자화에 대한 시각차가 발생하는 지급결제거래 유형은 지급수단의 비전자적 성격과 이를 처리하는 방식상의 전자적 성격이 교차하는 거래로서, 이러한 거래는 비전자적 지급수단인 현금, 수표를 계좌입금을 통해 전자적인 화폐가치로 변환하거나 그와 반대로 전자적인 화폐가치를 비전자적인 지급수단으로 변환하는—따라서 지급수단간 접점의 성격을 갖는—CD/ATM과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발견된다(표13 참조).

〈표13〉 지급수단, 채널, 거래유형에 근거한 전자화의 개념

지급채널	금융기관 창구			가맹점(오프라인)			CD/ATM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가맹점 (온라인)	
지급수단	현금 · 수표[주2]		계좌 이체	현금	수표	카드	현금 · 수표		계좌 이체	계좌 이체	계좌 이체	카드
거래유형	출금	입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출금	입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전자적 장치	×	×	○	×	×	○	○	○	○	○	○	○
비대면 (의사소통無)[주3]	×	×	×	×	○	○	○	○	○[주4]	○	○	○
비전자적 지급수단의 개입	○	○	×	○	○	×	○	○	×	×	×	×
전자금융거래법 관점 (이용자 보호 목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지급수단의 본질적 성격			전자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 측정 목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전자적**	**비전자적**	**비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주1) 지급수단과 지급채널의 조합에서 대표적인 거래유형만을 언급
주2) 일반 개인의 어음이용도는 낮기 때문에 비전자적 지급수단의 예는 현금과 수표로 국한
주3) 비대면성의 기준은 이용자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간의 의사소통 여부
주4) 이용자가 점내 CD/ATM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계좌이체 지시를 내리는 특수한 거래유형은 제외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금법은 CD/ATM을 통한 현금과 수표의 입출금거래를 전자적 방식을 따르는 지급거래로 간주하는 반면, 지급수단의 이용 측면에서는 현금과 수표라는 비전자적 지급수단을 매개로 이루어진 과거의 거래와 앞으로 이루어질 거래를 의

미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경향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현금, 수표의 출금거래는 전자적 화폐가치를 비전자적 지급수단으로 변환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대로 부차적인 현금지급거래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지급수단의 이용실태 측면에서는 비전자적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비교적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입금거래의 경우 비전자적 지급수단을 전자적 화폐가치로 변환한다는 측면에서 전자화의 개념에는 부합하나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지급수단의 이용측면에서 입금거래 한 건이 입금행위 이전에 과거의 현금지급 거래를 의미하고 있음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래에 개입되는 지급수단의 성격을 고려하는 시각과 지급수단이 처리되는 방식에 주목하는 전금법상의 전자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일부 지급거래가 성격이 전자적 방식인가 혹은 비전자적 방식인가에 대한 분류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표13에서 확인되듯이 CD/ATM을 통한 현금, 수표의 출금거래를 전금법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간주하는 반면 지급수단의 성격을 고려한 지급결제의 전자화 척도 관점에서는 전자화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는 전금법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보는 반면 지급수단의 성격을 고려하는 시각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채널에 대한 관점도 부분적으로 달라지는데 비대면성과 전자적 장치에 주목하여 전통적으로 전자지급채널로 간주되어 온 CD/ATM은 출금거래시 비전자적 지급수단을 확산시키는 성격을 띠는 반면, 대면성에 주목하여 전자지급채널에서 제외되어 온 금융기관의 창구의 경우 동 채널을 통한 거래에 사용되는 지급수단이 계좌이체와 같은 전자지급수단인 경우 금융기관의 창구를 전자지급채널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즉, 비대면 요건을 갖추지 않으나(금융기관 창구) 전자적 지급수단(계좌이체)을 이용한 거래를 전자지급거래로 간주하는 것—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중요 특성인 비대면 원격지 거래가 유발하는 경제적 편익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에서 지급수단의 성격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측정하는 시각의 합리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

이는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대한 시각 정립에 있어서 지급수단의 획득 · 처리 방식과 지급수단의 본질적 성격 중 어느 한쪽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두 시각 사이의 조화: 법률적 요건과 지급수단의 성격 요건을 동시 충족

법률적 정의가 기반을 두고 있는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지급수단의 성격을 고려하는 시각간의 차이는 전금법상의 전자적 방식 요건과 개입 지급수단의 전자적 성격 요건의 동시 충족을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전금법상의 전자적 방식 and 개입 지급수단의 전자적 성격 ⇔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이고 그 대우명제는 '~전금법상의 전자적 방식 or ~개입 지급수단의 전자적 성격 ⇔ ~실체적인 지급결제의 전자화'가 된다.

대우명제를 환언하면 전금법상의 전자적 방식 요건 또는 거래에 개입되는 지급수단의 성격이 전자적이지 않은 경우—즉, 비전자적인 경우—실체적인 전자화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율은 전금법에서 채택하는 전자화에 대한 관점을 존중 · 수용하는 동시에 지급수단의 성격을 전자화의 요건으로 추가하여 실체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측정하는 효과를 얻는다.

〈그림7〉 지급결제의 전자화에 대한 보완적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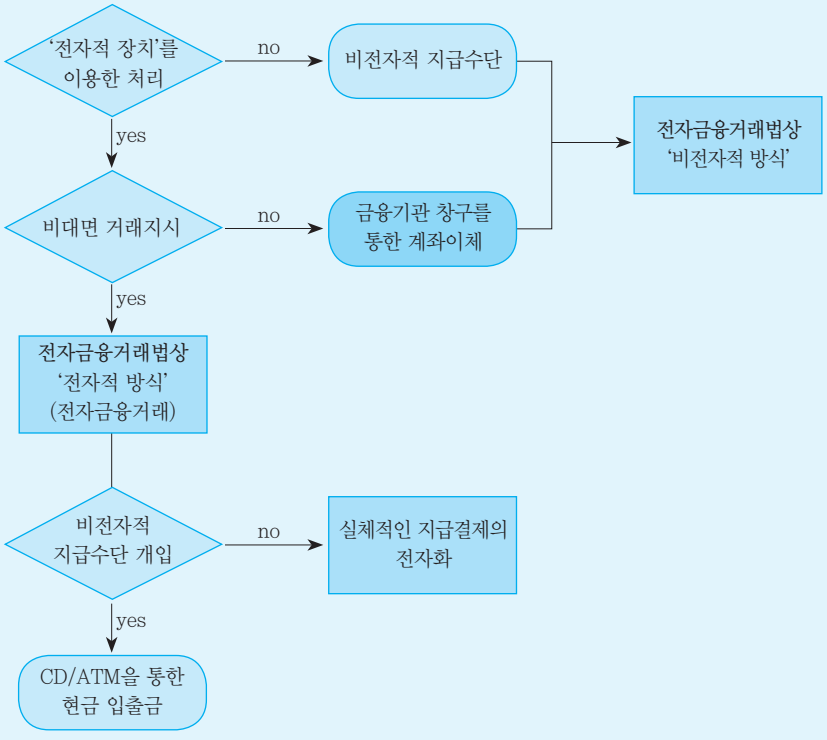

이러한 시각은 카드를 포함하여 실물(實物)지급수단이 개입되는 모든 거래를 전자지급거래 분류에서 배제하는 극단적인 엄격주의와, 지급수단의 성격에 상관없이 '전자적 방식' 요건을 갖출 경우 전자지급거래로 간주하는 전금법적 포괄주의의 중간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

III. 소 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실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급수단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되 지급수단이 이용 · 처리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성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전자의 시각이 전통적 · 포괄적이라고 규정한다면 후자의 시각은 보완적 ·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전자화를 보완적 · 보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1) 전자화의 정도가 기존의 통계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을 수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인 동시에, 2) 더딘 전자화를 지적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갖는 보수성의 일면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안들을 본고의 소결론이자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금의 특성상 현금의 전자지급수단으로의 흡수가 비현금 지급수단의 전자화보다 훨씬 더디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의 전자화의 정책적 초점은 어음, 수표와 같은 장표방식 비현금 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으로 흡수하는 비현금 지급수단내에서의 전자화보다 현금을 전자지급수단으로 흡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어음 · 수표 등 비전자적 비현금 지급수단은 개인보다 기업의 사용비중이 높아 정책의도에 따라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한 것과 달리 현금의 이용은 상거래 관습 등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현금의 전자지급수단으로의 대체는 지급결제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라는 재정정책상의 의의를 가진다.

둘째, 현금의 비현금 지급수단으로의 대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정책수단 등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지급결제제도의 보수적 성격의 일면이다.

마지막으로 현금의 대체 지급수단은 1차적으로 카드가 될 것이며 여타 여건이 갖춰질 경우 2차적으로 모바일채널을 통한 카드 및 계좌이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는 현금의 대체 지급수단이 갖춰야할 필수적인 요건은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이며 이러한 지급수단은 카드와 모바일채널을 통한 카드 및 계좌이체라는 점인데, 현금의 비현금화는 1단계로 이용방식 측면에서 현금과 유사성이 가장 높아 소지 · 이용이 간편한 카드로의 흡수가 이루어진 후 2단계로 다시 카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결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채널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는 스마트폰 결제를 위해서는 높은 기기가격과 사용시 요구되는 학습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금융결제국,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2009.12.)
[2] 금융결제국,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한국은행(2011. 9.a)
[3]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총람, 한국은행(2009. 5.)
[4] 금융결제국, 2010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한국은행(2011. 9.b)
[5] 금융결제국, 2010년도 지급수단 이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행(2010.12.)
[6] 금융결제국, 2011년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2011.11.)
[7] 금융결제국, 2011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한국은행(2011. 8.)
[8]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CPSS),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Red Book")-Figures for 2010,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2012. 1.)